

(앞 쪽)

제 호

토지 출입증(일시 사용증)
(유효기간:)

사 진

3cm×4cm

모자를 벗고, 뒤 그림
없이 상반신을 6개월
이내에 촬영한 것)

성 명

지방해양수산청장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65mm × 95mm 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(뒤 쪽)

토지 출입증(일시 사용증)

성 명:

생년월일:

주 소:

위 사람은 「연안관리법」 제35조에 따라 토지
등에 출입하거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
등을 변경·제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해양수산청장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<주의사항>

1. 이 증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, 토지 등
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·제거하
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녀야 합니다.
 2.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
여 주어야 합니다.
 3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
없습니다.
- 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
주시기 바랍니다.